

노사관계 동향

노사분규 동향

◆ 노사분규 전년동기대비 대폭 감소

○ 2005년 7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함(표 1 참조).

- 분규발생건수는 198건, 분규참가자수는 31,668명, 근로손실일수는 224,993일로 각각 전년동기 수치인 371건, 148,561명, 700,629일보다 크게 감소
- 이러한 감소는 임·단협 시기가 뒤로 늦춰지면서 생긴 현상임.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개소, 명, 일)

	2003. 7. 20	2004. 7. 20	2005. 7. 20
노사분규 발생건수(개소)	237	371	198
분 규 참 가 자 수(명)	96,450	148,561	31,668
근 로 손 실 일 수(일)	566,494	700,629	224,993

주: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
자료: 노동부.

노동정책 동향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용정책 대상인 ‘근로자’ 개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시책에 따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고용촉진 등 시책 강구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 등 고용촉진 등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인력수급 전망을 공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과 협의토록 함.
 -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의 수급동향 작성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함.
 - 사업주 및 노동조합 등의 책무에 ‘고용평등 촉진 노력의무’를 추가하고, 근로자의 능력발휘에 장애가 되는 기업 등의 차별적 고용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며,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훈련 대상자 모집 등의 분야에서도 성별 등을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함.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임단협 교섭 본격 돌입

- 양대노총 산하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본격적 임단협 교섭 및 투쟁에 돌입
 - 한국노총은 연일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노동정책기조를 비판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비정규보호입법 쟁취, 노동부장관 퇴진을 위해 민주노총과 연대할 것을 천명하면서 7월 7일 대규모 총파업 집회 개최.
 - 민주노총은 산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에 돌입함.
 - 금속노조는 지난 3개월간의 중앙교섭 끝에 지난 7월 19일,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금속산업 최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

활동 보장, 우리쌀 사용 등 큰 틀에서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

-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 전면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보건의료 산업 최저임금, 보건수당, 임금인상률 등의 쟁점을 놓고 7월 20일부터 전면파업 돌입, 7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결정으로 산별파업 종료됨.
- 한편 양대노총은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전면수정과 노동부장관 퇴진, 노동위원회 전면개편 등을 요구하며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직을 동반 사퇴함.
- 경총, 양대노총에 총파업 중단 요구
 - 경총은 성명을 통해 양대노총에게 불법정치총파업의 중단을 주장하며 정부에 게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을 요구함.
 - 특히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었음에도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의 행위는 그 불법성이 명확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을 주장

◆ 최저임금 재심의 관련, 노동부-양대노총 공방

- 양대노총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 양대노총은 지난 6월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사퇴한 가운데 노사단체의 최종안을 놓고 표결하여 사측 최종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불법임을 선언
 - 한편 내용적으로도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저하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기존의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킬 뿐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함.
- 노동부 재심의 요청 거부
 - 노동부는 근로자위원 등이 사퇴서를 제출했어도 후임자 위촉 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고 표결 선포 당시 이들이 출석하고 있었던 만큼 기권처리된 것이 절차상 적법하다고 반박
 - 또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중 주40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1.4%에 불과하고 종전 임금수준은 보전되므로 사각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힘.

주요노동일지

(2005. 6. 21~7. 20)

년·월·일	노동정책	노사단체	기업 및 노동조합
2005. 6. 21		· 양대노총: 한국노총 총주지부장 사망관련 결의대회 개최	· 민주당시노조: 서울지역 13개사 대상 정의행위 신고
6. 22		· 금속노조: 정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6. 22~6. 24)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정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6. 23		· 양대노총: 비정규직법안 국회 강행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공공연맹: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노·정 협약서 체결	· 언론노조 일간스포츠투지부: 정리하고 철회 등 요구, 파업 계속(6. 22~)
6. 24		· 중앙노동위원회: 금속노조 중앙교섭 조정중지 결정	· 금융노조 한미은행지부: 총파업 1주년 기념 및 4.20 인사테러 규탄대회 개최
6. 27		· 충북시민사회단체 공대위: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해결 촉구 기자회견 및 천막단식농성 돌입	· 충남공공환경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전면파업 돌입
6. 29		· 금속노조: 100개소 12,000명 1차 4시간 시한부파업 돌입	· 현대자동차노조: 불법파견 관련 특별교섭요구, 무산
6. 30		· 양대노총: 요구사항 및 투쟁계획 발표 공동기자회견 개최	· 대우자동차노조: 대의원대회 개최, 노동쟁의 조정신청(7. 1) 결의
7. 5		· 민주노총: 7.20 이후 대화중단 및 전면투쟁 돌입 기자회견 개최	· 전국향운노련: 전국하역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개최
7. 6		· 금속노조: 79개소 10,600명 2차 4시간 시한부파업 돌입	
7. 7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개최(~7. 8)	· 한국노총: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7. 8		· 금속노조: 96개소 12,600명 3차 4시간 시한부파업 돌입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 임단협 잠정합의
7. 12		· 금속노조: 76개소 10,800명 4차 4시간 시한부파업 돌입	·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임단협 관련 전면파업 돌입
7. 13		· 금속노조: 66개소, 10,600명 5차 6시간 파업 돌입	· 고려시멘트노조: 임단협 관련 시한부(~7. 14) 전면파업 돌입
7. 15		· 금속노조: 55개소, 9,900명 6차 4시간 파업 돌입	· 대우자동차노조: 임금교섭 관련 정의행위 결의
7. 19		·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쟁점사항 잠정합의	
7. 20		· 보건의료노조: 파업돌입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전면파업 계속(7. 18~)